

##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

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2조의5(교육기관의 지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,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 내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·단체는 신청바랍니다.

2026년 5월 4일

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



### 1. 지정목적

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수상구조사 사전교육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기관을 지정하고자 함

### 2. 지정개요 및 기준

가. 지정명칭: 「수상구조사 교육기관」

나. 지정분야

- 1) 수상구조사 1급·2급 사전 교육과정(64시간) 모두 운영
- 2) 수상구조사 2급 사전 교육과정(40시간) 운영

다. 신청자격 (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)

- ① 해양경찰, 소방 등 수상구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
- ② 학교 및 연구기관
- ③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허가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
- ④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수상구조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

다. 지정기준: 「수상구조법 시행규칙」 제12조의5제1항 [별표4] 및 같은법 제12조의7제1항 [별표6]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

### 3. 접수기간 및 방법

가. 접수기간: '26. 5. 4.(월) ~ '26. 6. 4.(목) / 1개월

나. 접수장소: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 수색구조계

※ 주소: (58682) 전남 목포시 남악로 162번길 25, 서해지방해양경찰청  
구조안전과 수색구조계(3층)

다. 접수방법

- 방문접수: 평일 09:00 ~ 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- 우편접수: 접수 마감일('26. 6. 4.) 우체국 소인이 찍힌 신청서까지 접수

### 4. 제출서류

가. 교육기관 운영계획서

- 1) 신청 단체 또는 기관의 조직 및 현황
- 2) 재정적 기반에 관한 사항
- 3) 교육과정의 구성

- 4) 교육교재 및 교안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- 5) 강사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
- 6) 교육생의 관리, 교육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
- 7) 교육비의 산정에 관한 사항
- 8) 안전사고의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
- 9) 교육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
나.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다.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·시설의 사용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라.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

※ 제출부수: 원본 1부(등기우편), 사본 한글파일 1부(이메일)

## 5. 심사 및 결과 발표

### 가. 심사방법

- 1) 기관·단체에서 제출한 서류심사와 지정기준 충족여부 현장실사

※ 지정기준에 미흡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기간에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

- 2)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 바탕으로 지정여부 심사위원회 개최

나. 심사결과 발표 및 지정서 발급

- 1)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7일 이내에 지정서 발급 교부 또는 지정 불가 사유 개별 통보
- 2)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수상구조사종합정보시스템에 교육기관 지정 고시

## 6. 기타 유의사항

- 가. 제출서류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, 접수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
- 나.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 등을 할 수 있으며, 제출서류 일부 미제출 시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
- 다. 본부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, 지부별 교육기관 지정은 신규 지정 절차에 따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함 (2급 제외)
- 라. 심사위원회 진행 및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비공개가 원칙이며, 신청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마.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허위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」 제12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함
- 바. 교육기관별 원활한 운영과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여 국민에 대한 교육의 질의 확보하여야 함으로, 교육 운영은 소재지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관내로 한정함

## 7. 문의처

-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수상구조사 담당
  - (전화) 061-288-2546, (전자우편) [copstock@korea.kr](mailto:copstock@korea.kr)